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5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임오경 · 안호영 · 진성준
김현정 · 조정식 · 윤준병
김재원 · 박홍배 · 김 윤
이기현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을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람자 확인 등) ① 공연자는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범죄 또는 안전사고 등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람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자 정보의 범위와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신고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u>상습 또는 영업으로</u> 자신이 <u>구입한 가격</u> 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관람자 확인 등) ① 공연자는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범죄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박

<신 설>

한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람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자 정보의 범위와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신고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